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7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및 소관 상임위 결과 보고 (임미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3

가. 개요 ····· 4

나.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 9

다. 할당관세 부과 실적의 보고 ····· 14

라. 할당관세 부과 결과에 대한 추가적 검토 ····· 16

Ⅰ.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및 소관 상임위 결과 보고 (임미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임미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할당관세(제71조)	□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 ㅇ수입가격 급등 등 일정 요건 만족시 기본세율 ± 40%p까지 할당관세 부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책 마련(부과 중지, 세율조정 등)	○ 관세 부과 대상이 농림축수산물인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순산위원회에 적용대상 등*에 대해 심의 필요 ○ *적용 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 <신 설>		○ 대상 물품 수입으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의 현저한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 중지 조정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	○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기관의 장은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 및 결과 (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농림축수산물인 경우,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
○ <신 설>	○ 할당관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 행	임미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❶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❷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할당관세의 부과 결과 검토 가능 ○ 시행일: 2025.1.1.	○ 시행일: 2025.1.1

* 임미애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76), 윤준병의원안 2024. 10. 23. 제출(의안번호 4848)

가. 개요

□ 개정안은 할당관세 부과 시의 대책을 수립하고 부과로 인한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결과 등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등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입법취지가 있음.

구체적으로 임미애의원안은 ①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중지 및 세율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② 품목과 관련된 중앙 부처의 장은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부과 효과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③ 할당관세가 부과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게 그 부과 결과를 검토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①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중지 및 세율 조정 등을 할 수 있고 ② 할당관세 부과 품목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③ 할당관세 부과 품목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하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 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높여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이를 할당관세 제도라고 함. 할당관세 부과 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수량 또한 제한 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3년 기준 총 117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재료,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와 물가 불안 대응 등을 위한 중소기업·농축수산업등 분야에 주로 할당관세 제도가 운용되었음.

2023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2년 1조 9,694억원 대비 8,940억원 감소한 1조 753억원으로, 이는 2022년대비 LNG 0% 할당관세의 적용기간 축소 및 LNG 수입금액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분과, 소고기, 항공유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품목에서의 제외(약 3,100억원)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2)]

[2019년~2023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세 수입액(결산, A)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2
할당관세	품목 수	79개	79개	92개	119개	117개
	세수지원액(B)	4,709억원	3,742억원	6,758억원	19,694억원	10,753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4.2%)	(△20.5%)	(80.6%)	(191.4%)	(△45.4%)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6.0%)	(5.3%)	(8.2%)	(19.1%)	(14.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연도별「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

□ 이와 같이 할당관세의 적용 품목수와 세수지원(추정)액의 규모가

2) 2023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보고

최근 2년간 1조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할당관세와 관련한 사후적 통제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국회 등에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결산 관련자료에 할당관세 관련 사항이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 등의 평가 및 환류작업도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관세지원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나 이와 관련한 사후적인 통제도 부족한 상황임. 농축산물 수입업자에 귀속되는 관세지원액은 2021년 1,854억원에서 2022년 5,520억원, 2023년에는 3,934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2021년 22개이던 지원품목 수는 2022년 38개, 2023년 46개, 2024년 6월 기준 67개로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할당관세 품목 중 농축산물등 최종소비재에 종사하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품목수	22개	38개	46개
수입물량	1,598만톤	1,905만톤	1,917만톤
금액	6.4조	10.8조	10.2조
관세지원액 (추정치)	1,854억	5,520억	3,934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

□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①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과 경쟁관계 등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조사를 통해 확인 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하되 윤준병의원안은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임미애의원안은 할당관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의 부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④ 윤준병 의원안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이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국회 농해수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

□ 2건의 개정안은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산업 중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국내유사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그 대책을 마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가격은 일부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3]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4]

정부는 2024년 또한 동년 3월부터 「농산물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및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있음.[5]

현재까지 할당관세의 운용 양태를 보면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대개 원활한 물가수급이나 물가안정, 중

---

3) 2023년 기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할당관세 지원액이 각각 1,000~2,400억원 규모였으며, 닭고기·옥수수·돼지고기·설탕등 먹거리도 지원액이 큰 상위품목이었음.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1% 하락시 생산자가격 인하 효과는 △0.26%~△1.11%,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0.10%~△0.84%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효과보다는 생산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음.

4)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비용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농축산물 등 최종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소비자 물가로의 전가율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5) 특히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 할 것을 밝힌 바 있음.
“하반기 농산물·식품원료 51종 할당관세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6.4.

소기업과 농축산업지원, 첨단산업 지원, 세율불균형의 시정등을 이유로 관세를 인하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유사산업 종사자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입 물량 확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추세임.[6] 또한 반복되는 할당관세 정책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능력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7]도 제시되었으므로,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2건의 개정안과 같이 국내유사산업업체[8]들이 할당관세 부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 되는 경우 할당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둘 경우 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내유사산업 종사자들 간의 다른 이해관계 속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 후생의 순손실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되고 ②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유사산업에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된 경우 할당관세의 부과 중지 및 세율 조정을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을 두어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유사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 할당관세 부과 품목과 관련하여 할당관세가 농림축수산물 품목에 적용 되는 경우 관련 물품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일부 농축수산 품의 경우 올해 할당관세로 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또한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단체등을 통해 자체적인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상치 못한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물량의 변동성이 심화 되는 경우 농산물 수급과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7)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5.14

8) 임미애의원안: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윤준병의원안: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정부는 할당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 중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할당관세 부과 시 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예로 들면 정부는 2024년도에 계약재배 농업인의 수급조절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552억원,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 총 394억원을 편성하였음.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물량 증대 및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손실을 보전할만한 재정 지원 정책도 일부 추진 중인 바, 개정안과 같이 할당관세에 따른 부작용만을 근거로 할당관세 세율을 조정하는 강행규정을 둘 경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내의 균형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윤준병의원안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농축수산물이 물가 및 전체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기여도는 2023년 6월 0.01%p에서 2024년 4월 0.77%p로 상승하였음.[9]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로 과실·채소류 중심의 물가상승 견인효과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심화로 이른바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한 공

9)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5.14

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근거로 할당관세에 대해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을 제한하는 경우,

급격한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는 정책시행이 어려워 할당관세 도입으로 국가총경제의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할당관세는 일정수량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아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 우려되는 경우 부과 중지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임.[10)]

□ 따라서 할당관세의 도입에 따른 물가 안정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귀속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할당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한 관련 품목 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총후생은 증가하더라도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할당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편익과 비용의 변화 등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할당관세 부과 시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윤준병의원안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10)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는 적극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파급 효과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결론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유사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정책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유사물품 등[11]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피해의 기준 및 발생 우려 정도에 대한 해석의 상이함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대책마련의 요건을 조사 결과에 따른 유사물품 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으로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

다. 할당관세 부과 실적의 보고

□ 개정안은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은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하고, 부과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은 부과실적 및 결과등을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재위 및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적으로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중 이나,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으로 정책효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타 중앙부처 및 타 상임위에 공유가능하다는 입장임.

라. 할당관세 부과 결과에 대한 추가적 검토 등

□ 임미애의원안은 할당관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부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할당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이행한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효과 등의 보고 주체를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증은 가외적인 검증으로 비추어질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윤준병의원안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이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국회 농해수위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할당관세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지는 농림축수산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①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며 ② 할당관세는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시행 될 필요성이 있어,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사전적 심의를 규정하는 경우 제도의 본래 효과로서 물가 안정등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6